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 월 11 일

여 수 시 장 2023.1.11



여수시 조례 제1914호

붙임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 제목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을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협의체를” 을 “실무협의체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실무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보칙” 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으로 한다.

제32조를 제40조로 하고,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제35조(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나 임기 도중 신규 위촉된 경우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단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7조(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 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p>	<p>제9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① ----- ----- ----- ----- 실 무협의체를 -----.</p> <p>② 시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실무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③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장</p> <p>〈신 설〉</p>	<p>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p>
<p>〈신 설〉</p>	<p>제32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3조(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p>

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신 설>

제35조(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나 임기 도중 신규 위촉된 경우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6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단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p>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신 설〉	<p>제37조(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p>
〈신 설〉	<p>제3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신 설〉	<p>제39조(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제32조 (생략)	제40조 (현행 제32조와 같음)